

Article

해양경계획정제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통킹만 사례고찰

양희철¹ · 박성욱^{2*} · 권문상²¹College of Law, National Taiwan University

21 Hsu-Chow Road, Taipei(100), Taiwan

²한국해양연구원 정책조정실

(425-600)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29호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Regime for the Gulf of Tonkin
Dispute and China's PositionHee Cheol Yang¹, Seong Wook Park^{2*}, and Moon Sang Kwon²¹College of Law, National Taiwan University

21 Hsu-Chow Road, Taipei(100), Taiwan

²Policy Coordination Department, KORDI

Ansan P.O. Box 29, Seoul 425-600, Korea

Abstract : Coastal states are adopting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s their primary maritime policy because maritime jurisdiction directly relates to vast economic interest. This becomes specially important and sensitive when complex maritime boundary issues are involved between neighboring coastal states. China has not actively carried out nor declared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until recently with any country except Agreement between China and Viet Nam on the demarcation of the territorial water,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and the continental shelf of China and Viet Nam in the Gulf of Tonkin on 25 December 2000 (hereinafter, the Gulf of Tonkin Agreement). The principles that governs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re to consider primarily an agreement between States concerned, however, if no agreement can be reached, all relevant circumstances are considered to achieve an equity between concerned States. Relevant circumstances are length of coastline, form of coastline, existence and position of island or islands, speciality of geology/topography, and factor of economy and defence. Factors which sinologists are considering in regard to continental shelf delimitation of the Yellow Sea are as follows; i) geographical factor, ii) geological factor, iii) topographical factor, iv) environment and ecological factor, v) historic interest, and vi) social and economic interest. The 'Gulf of Tonkin Agreement' is completed by basically applying the principle of delimitation according to median line which seems that China has adopted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principle of 'half and half' which was the intention of Chinese government. At the same time, China recognized Viet Nam's dominion and sovereign right over the partial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of Dao Bach Long Vi in Gulf of Tonkin. This case can be considered as an example of mutual concession or compromise in delimiting maritime boundary for states of concerned.

Key words :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대륙붕(continental shelf), 해양경계획정(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자연적 연장(natural prolongation), 관련상황(relevant circumstances), 통킹만(Gulf of Tonkin), 중간선 원칙(median line principle)

*Corresponding author. E-mail : swpark@kordi.re.kr

1. 서론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한지도 10년이 되었다.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하 '해양법협약'이라 함)은 그동안 바다의 헌법적이라 불리어 오고 있지만 실질적 적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다의 경계를 둘러싼 문제로서 해양법협약은 해양경계획정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해양법협약은 제74조와 제83조를 통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경계획정은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국제법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형평한 해결을 얻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등 규정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거나 혹은 모호한 해결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 기준미비는 각 개별국가간 합의나 국제재판을 통해 해양경계획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가관행은 약 150여개로 구성되고 있는데 경계획정 합의가 된 사례는 약 130여개이고 사법 또는 중재판결인 사례는 약 20여개에 이르고 있다¹⁾.

해양경계가 각국에 부여하는 의미는 단순한 군사적 의미를 넘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함께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국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등이 해양경계획정의 적용기준과 원칙 등에 있어서 특이점을 보이는 것 역시 이러한 해양경계의 확장이 곧 자국의 경제지도 확장으로 이어진다는데 기인한다.

한국의 경우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²⁾」과 「배타적 경제수역법³⁾」을 통해 각각 12해리(대한해협 3해리) 영해와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였다. 중국은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⁴⁾」에 근거하여 1996년 5월 15일 「영해기선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성명」을 통해 대륙의 영해기선과 서사군도의 영해기선 기점을 공포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⁵⁾」을 제정하였다.

동북아시아의 해양 경계를 둘러싼 한중일 삼국간의 사활적 접근 방식과 각 국가간 개별적으로 체결한 양자조약(한중, 한일, 중일어업협정) 마저 대상 수역에서 중첩된 현

상을 보이는 것은 해양이 각국에 얼마나 중요한 대상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은 향후 황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해양경계획정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渤海에 대한 중국의 內水化 정책과 관련하여 단계적 접근을 위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황해와 동중국해는 400해리에 달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어 중국과의 필연적 합의과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직선기선 기점 선정 방식에서부터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둘러싼 경계획정 원칙에 대한 철저한 접근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중국이 동중국해, 황해, 남중국해에서 모두 해양경계획정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베트남과의 통킹만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국가와도 현재까지 대륙붕 혹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중국 역시 국가적 이익에 직결된 해양문제에 신중한 접근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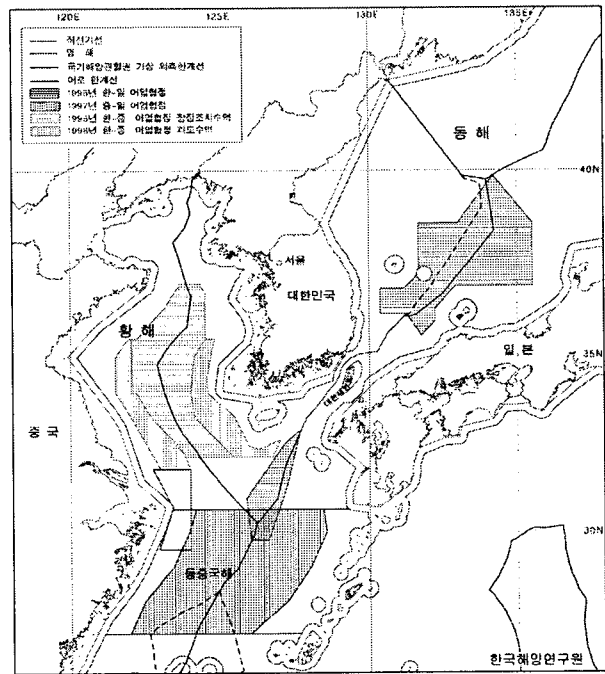


Fig. 1. Current Fisheries Regimes in the Northeast Asian Sea.

¹⁾Jonathan I. Charney and Lewis M. Alexander,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London, Martinus Nijhoff, 1993); Tullio Treves,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The Book Revie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8, 1994, pp.179-180.

²⁾1977.12.31 제정, 1995.12.6 개정, 1996.8.1 시행

³⁾1996.8.8 제정, 1996.9.10 시행

⁴⁾1992.2.25 제정, 시행

⁵⁾1998.6.26 제정, 시행

본 논문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과정에서 표출된 해양 경계획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살펴보고, 통킹만에서의 중국·베트남간 경계획정문제를 통해 중국입장을 유추하여 향후 황해에 대한 경계획정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주요 목적으로 두었다.

2.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중국의 태도

제1~2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의 중국의 주장

정치와 역사적 요인으로 인해 중국은 1971년에 이르러 유엔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⁶⁾. 중국이 유일정부로 인정받기 전에 유엔내에서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받았던 대만은 1958년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 참석하여 1958년 4월 대륙붕협약에 서명하였다⁷⁾. 대만은 서명 당시 어떠한 유보조항도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는 대만정부가 당시 '대륙붕'이라는 법률개념에 대하여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1968년 10월 UN의 아시아 극동 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 : ECAFE)의 「아시아 근해의 광물자원탐사를 위한 공동위원회」(Committee for Coordination of Joint Prospecting for Mineral Resources in Asian Offshore Areas : CCOP)의 후원하에 실시된 Emery보고서⁸⁾는 대만과 일본사이의 해역에 세계최대의 석유자원이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함으로서 관련 연안국의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본 지역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생성에 가장 유리한 부분은 바로 대만 東北方의 20萬km²의 구역이다. 해당 지역의 침적물의 두께는 2 km를 넘으며, 대만부근에서는 이것이

9 km에 달하게 되는데, 그 중 5 km 두께의 新3紀에 해당하는 침적물이 있다. 대륙붕 아래의 침적물은 대부분 모두 第3紀 岩層에 속한다고 보여진다. … 일본과 한국 및 대만에서는 거의 모든 육지의 석유와 가스는 第3紀의 岩層에서 생성된다. 따라서 대만과 일본의 대륙붕층은 세계 석유 매장량에서 가장 풍부한 지역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⁹⁾.”

Emery 보고서가 발표된 후, 東中國海 지역에 대한 석유 매장량을 평가하는 각종 자료가 나오기는 하였으나¹⁰⁾, 釣魚臺列嶼(센카구제도)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확한 실증 자료는 알려지고 있지 않다. 문제는 Emery 보고서가 발표된 후, 대만은 1969년 7월 17일 “동중국해의 대륙붕이 대륙붕협약에서 규정하는 육지(琉球群島)의 자연적 연장(natural prolongation of land territory)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釣魚臺列嶼에 대한 권익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된다¹¹⁾. 이와 함께 1970년 10월 대륙붕협약을 비준하면서, 대륙붕협약 제6조 1항과 2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유보조항을 발표하였다.

중화민국정부는 본 협약 6조 1항 및 2항의 대륙붕경계 획정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① 해안을 인접하거나 혹은 대항하는 2개 이상의 국가가 대륙붕경계획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국가영토의 자연적 연장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② 중화민국의 대륙붕 경계선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해면에 돌출된 어떠한 礁嶼도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¹²⁾.
- 그러나 대만이 당시 유일한 합법정부의 입장에서 서명한 1958년의 대륙붕협약에 대하여 중국은 승인하지 않았으며, 1958년 제네바에서 채택된 4개 협약에도 서명·비준하지 않았다.

⁶⁾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 79, No 2022, January 1979, p.25 ; Louis Henkin, Richard C. Pugh, Oscar Schachter and Hans Smit, *International Law, Cases and Materials*(St. Paul, Minn : West Publishing Co., 1993), pp.300-301.

⁷⁾UN과 국제법위원회의의 노력으로 1958년 Geneva에서 개최된 제1차 해양법회의에서 4개의 협약을 체결(영해 및 접속수역, 공해, 공해상의 어업 및 생물자원의 보존, 대륙붕)하였으나 영해의 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960년 제2차 해양법회의가 개최되었지만 역시 실패하였다. 유병화, 「국제법II」, (서울:진성사, 1995), 10-11쪽.

⁸⁾Emery, K.O., Y. Hayashi, T.W.C. Hilde, T. Kobayashi, J.H. Koo, C.Y. Meng, H. Niino, J.H. Osterhagen, L.M. Reynolds, J.M. Wageman, C.S. Wang, and S.J. Yang, “Geological structure and some water characteristic of the East China Sea and the Yellow Sea”, *UNECAFE/CCOP Technical Bulletin*, Vol. 2, 1969, pp.4-43.

⁹⁾*Ibid.*, pp.39-41.

¹⁰⁾馬英九, 「從新海洋法論釣魚臺列嶼與東海劃界問題」(台北 : 中正書局, 1986); 劉錫江外3人, 「釣魚臺列嶼附近海洋環境與資源之調查與研究」, 臺灣行政院研究發展考核委員會(台北 : 1992); 釣魚臺를 중심으로 한 東中國海의 석유매장량에 관한 자료는 Bosum, W., G.D. Burton, and S.H. Brasse, “On the current geological knowledge of East China Sea and its petroleum potential : Abstract”, *Oil and Gas Geology*, Vol. 9, 1990, pp.100-108; Wageman, J.M., T.W.C. Hilde, and K.O. Emery, “Structural framework of East China Sea and Yellow Sea”, *AAPG Bull.*, Vol. 54, 1970, pp.1611-1643 참조.

Ma, Ying jeou, *Legal Problems of Seabed Boundary Delimitation in the East China Sea*, (Baltimore : Contemporary Asian Studies, 1984), pp.18-22 ; 기타 釣魚臺를 중심으로 한 東中國海의 석유매장량에 관한 자료는 劉錫江外3人, 「釣魚臺列嶼附近海洋環境與資源之調查與研究」, 臺灣行政院研究發展考核委員會(台北 : 1992)

¹¹⁾臺灣 中央日報(1969. 10. 18)

¹²⁾許慶雄 總編輯, 當代 國際法文獻選集(台北 : 前衛, 1998), 331쪽

대륙붕제도에 대한 중국의 주장

중국은 1971년 유엔에서 유일합법정부로 인정받은 후, 1973년부터 1982년까지 9년 동안 지속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 처음부터 참여하였다. 유일합법정부로 인정받은 이후 1972년 3월 3일 중국정부는 ‘국가관할권 밖에 있는 심해저 및 해상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이하 ‘심해저의 평화적 이용위원회’라 함)¹³⁾ 중국의 대륙붕제도에 관한 기본 입장을 천명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각 연안국가가 그 연안의 해역·해저 및 하층토의 천연자원을 지배하여, 인민의 복지사업과 민족경제의 이익을 촉진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1973년 중국대표단은 심해저의 평화적 이용위원회 제2차 소위원회에 “국가관할 범위내 해역에 관한 업무 문서”를 제출하면서 중국의 대륙붕제도에 대한 원칙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대륙붕을 대륙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근거한다는 원칙은 연안국이 그 영해 혹은 경제수역 이외에서 구체적 지리조건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그 배타적 관할하의 대륙붕 범위를 확정할 수 있으며, 그 최대 한도는 각국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¹⁴⁾.

이러한 중국의 기본 입장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각 회기를 통해 지속되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중국은 一國의 대륙붕이 200해리에 못 미치는 경우 단지 자연적 연장원칙의 실시를 해하지 않는 경우, 200해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동의한다¹⁵⁾. 협약 초안 제76조는 대륙붕의 정의에 관하여 沿海國 대륙붕은 자연적 연장원칙을 기초로 대륙주변부 외연까지 확장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대륙붕·대륙사면 및 대륙대를 포함한다. 우리는 과학적 지질자료에 근거하여 세계 각지 대륙붕 및 대륙주변부의 지리, 지질구조가 서로 동일하지 않으며, 일부 지역은 대륙대라는 지형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

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제76조는 대륙붕에 관한 정의 혹은 개념의 일반적 규정이라고 생각하며, 여기에는 일정 정도의 융통성을 포함하여 각기 다른 상황 및 특징을 가진 세계 각지의 대륙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중국은 제76조 1항중의 일부 조문, 즉 “~까지 확장”이라는 문구 뒤에 “~ 초과하지 않는”이라는 문구를 첨가하여, 연안국의 대륙붕 규정이 그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포함하는 “대륙주변부 외연의 ... 초과하지 않는”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의한 바 있다¹⁶⁾.

상술한 자료로 볼 때, 중국의 대륙붕 제도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제사법재판소가 1969년의 북해대륙붕경계 획정 사건(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 ICJ)에서 판결한 “대륙붕은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원칙을 견지한다.

둘째, 연안국은 대륙붕의 합리적 범위내에서 대륙붕 및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향유한다.

셋째, 대륙붕의 외측 한계선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지리 및 지질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대륙붕의 외측 한계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초과할 수 있다.

넷째, 자연적 연장원칙을 해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200해리를 넘지 않는 해역에서는 대륙붕을 200해리까지 확장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대륙붕경계획정에 대한 중국의 주장

중국정부 대표단이 1973년 심해저의 평화적 이용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제출한 “關於國家管轄範圍內海域的工作文件(국가 관할범위내 해역에 관한 업무문서)”에는 “대륙붕을 상호 연결하는 인접국 혹은 대항국은 대륙붕 관할 범위의 획정에 대하여 평등한 협상을 기초로 공동으로 확정하여야 한다¹⁷⁾”고 하였다.

대륙붕경계획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에 관하여는 국제판례와 각국의 해석에 따라 부단한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7차 및 제8차 회의에서 대륙

¹³⁾UN총회는 1968.12.31 결의 2467(XXIII)을 채택하여 ‘국가관할권 밖에 있는 심해저 및 해상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the Sea-bed and the Ocean floor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를 설치하였다. UN총회는 이 위원회의 작업 결과를 내용으로 1970.12.17 국가관할권 밖에 있는 심해저·해상 그 지하를 지배하는 원칙을 선언하였고 같은 날짜에 결의 2750을 채택하여 제3차 해양법회의를 1973년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제3차 해양법회의는 총11회기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1982년 4월 30일 해양법협약 초안을 표결에 붙여 130:4(기권 17)로 채택하였다. 유병화, 전게서, 11-12쪽

¹⁴⁾중국대표단이 제출한 “국가관할범위내 해역의 업무 문서(關於國家管轄範圍內海域的工作文件)”, 北京大學校 法律系國際法教研室編 《海洋法資料彙編》, 73-76쪽 참조.

¹⁵⁾《中國代表團出席聯合國有關會議文件集(중국 대표단의 UN회의 출석에 관한 문서집)(1980. 7-12)》(北京 : 世界知識出版社, 1982), 279쪽.

¹⁶⁾《中國代表團出席聯合國有關會議文件集(중국 대표단의 UN회의 출석에 관한 문서집)(1982. 1-6)》(北京 : 世界知識出版社, 1983), 85쪽.

¹⁷⁾北京大學校 法律系國際法教研室編, 《海洋法資料彙編》(北京, 1974), 76쪽.

봉경계획정에 대하여 중국정부가 표명한 입장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해양경계획정은 쌍방이 형평한 원칙에 근거하여 협상과 담판을 통하여 공동으로 확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에 도달하여야 한다.

둘째, 협의에 의한 경계획정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해양경계획정 담판중에는 모든 관련 요소 및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중간선 혹은 등거리선은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며, 형평원칙에 부합하는 상황하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형평원칙과 동일시 될 수는 없다.

다섯째, 형평원칙은 국제적으로 일련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중요한 판례에서 확인된 원칙일 뿐 아니라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¹⁸⁾.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중국의 국내법

중국은 해양법협약의 원서명규 중의 하나로서, 다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1996년 5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비준결정을 하였다¹⁹⁾. 중국의 해양법협약 비준에 관한 결정시에 발표한 선언을 보면 다음의 4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해양법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국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향유한다.

둘째, 중국은 해안과 대항하는 혹은 인접하는 국가와 협상을 통하여 국제법에 기초하여 형평한 원칙에 따라 각 해양관할권의 경계를 획정할 것이다.

셋째, 중국은 1992년 2월 25일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영해와 접속수역법” 제2조에서 열거한 각 群島와 도서의 주권을 거듭 천명한다.

넷째, 중국은 “해양법협약”의 영해내 무해통항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연안국이 그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외국 군함에게 영해를 통과하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허가를 얻거나 해당국에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을 재차 선언한다²⁰⁾.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원칙은 1998년 6월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을 통해서 법제화 되었다. 중국이 제정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은 제2조에서 해양법협약에 근거하여 중국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향유함을 천명하고 있으며, 동시에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국제법에 기초한 형평의 원칙에 따라 협의로서 획정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²¹⁾.

3. 황해의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법

지리적으로 황해는 중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한국은 황해와 동중국해 북부에서 광구를 확정하고 있으며²²⁾, 중국은 이에 대하여 외교적 성명을 통해 항의한 바 있다²³⁾. 황해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하여 중국과 한국이 반드시 협의를 통한 획정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양국이 공감하고 있다. 중국측이 해양경계 획정 문제에 있어서 주장하는 가장 중심된 주장은 i) 형평의 원칙, ii) 각종 관련 조건의 고려(양국의 해안선 길이의 합리적 비례 등)로 요약된다. 향후 한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협의를 할 경우, ‘중간선’은 당사국 협의의 첫 출발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중간선은 당사국간에 협의절차를 통해 형평한 해양경계획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자 형평스런 해양경계에 달하기 위한 첫 단계를 의미한다.

황해의 해양경계획정²⁴⁾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크게 지리적 요인, 지질학적 요인, 지형적 요인, 환경 및 생태적 요인, 역사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등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리적 요인

중국은 지리적 고려 요인으로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

¹⁸⁾제7차 회의에 관하여는 《中國代表團出席聯合國有關會議文件集》(北京：人民出版社，1978)，126-127쪽；제8차 회의에 관하여는 《中國代表團出席聯合國有關會議文件集》(北京：世界知識出版社，1979)，83-84쪽 참조.

¹⁹⁾정식 명칭은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批准〈聯合國海洋法公約〉的決定》로서 1996년 5월 15일 통과되었다.

²⁰⁾國家海洋局政策法規辦公室編，「中華人民共和國海洋法規選編」(北京：海洋出版社，1998)，3쪽.

²¹⁾《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제2조는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중국 영해 외측으로 영해와 隣接한 구역으로 領海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로 한다. 중국의 대륙붕은 중국 영해 이외의 본국 육지영토 전부의 자연적 연장으로, 대륙주변부 외연 해저 구역의 해저와 하층도를 말한다. 만약 영해 폭의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대륙주변부 외연의 거리가 200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200해리까지로 한다. 중국과 해안을 인접하거나 혹은 對向하는 국가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하여 그 주장이 중첩되는 경우, 국제법에 기초하여 형평원칙에 따라 협의로서 경계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²²⁾한국은 1970년 1월 1일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하여 총 11개로 구성되는 해저광구를 지정하고 있다(법 제3조 2항 및 영 제3조).

²³⁾中國 人民日報(1974년 2월 5일).

²⁴⁾황해의 해양경계획정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대상으로 하는 바, 거리기준인 배타적 경제수역과 달리 육지의 자연연장이나 대륙붕의 형상 등 특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대륙붕경계획정으로 특정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을 우선 거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황해대륙붕은 중국쪽으로는 비교적 淺海라는 점과 한반도 쪽으로는 비교적 深海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법률적으로는 일본은 황해대륙붕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없으며, 九州島(Kyushu Island) 해안육지의 연장부분은 황해 남단 경계선 以南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중국의 동중국해 대륙붕에 속하는 부분이 지 황해 대륙붕에 속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한다. 대륙붕이 천해거나 심해라는 깊이 기준으로 보는 중국의 입장은 대륙붕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진다. 대륙붕이란 육지의 자연적 연장으로서 동일한 shelf 여부가 문제될 뿐 깊이에 따라 대륙붕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지리적 고려 요인의 두 번째 항목으로 거론되는 것은 沿海 삼국(한국, 중국, 일본)의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라는 거리에서 출발하는데, 황해의 폭이 어느 부분에서도 모두 400해리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거리적 요인 또한 황해 해양경계획정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리적 고려요인의 세 번째 항목은 해안 상대국의 해안선 길이를 비교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는 황해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山東半島가 매우 굴곡있는 해안선을 가진데 근거한 것으로, 북한과 한국과 비교하여 중국에 인접한 황해 해안선의 길이가 뚜렷하게 길다는 데서 출발한 주장이다. 해안선 길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준 즉 비교해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안선의 길이와 대륙붕의 형성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당사국간 영해기선 기점에 대한 이견 역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아직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며, 영해기선을 유엔사무총장에 제출하지도 않았다²⁵⁾. 그러나 중국과 한국은 이미 직선기선제도를

를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1958년 영해를 선포할 당초부터 영해 범위를 직선기선 방식으로 확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으나²⁶⁾, 1996년 5월 15일 이전까지는 그 구체적인 직선기선을 공표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 황해(서해) 부근 수역에 있는 많은 작은 섬과 암초(rocks)들이 향후 경계획정시 효과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⁷⁾. 그러나 중국의 직선기선 기점에는 중국 양자강 하구에서 69해리나 떨어진 童島를 포함한 암초들을 이들 기선의 기점으로 삼고 있고, 기점 9와 10도 직선기선의 요건을 위배하고 있다²⁸⁾.

지질 및 지형적 요인

황해는 중국대륙주변부와 서태평양지각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께는 약 8~30 km에 달한다. 중국에서는 황해의 구조적 위치가 지구 구조의 영향으로 인해 북쪽 황해海盆은 華北육괴에 속하고 남쪽 황해海盆은 양자강 육괴에 속한다는 것을 들어 중국 대륙의 古陸地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것을 지질적으로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한다²⁹⁾.

또한 지형학적 요인에서도 황해는 매우 얇아서 최고의 수심도 100 m에 불과하고, 이 또한 대부분 한반도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모든 대륙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경사져 있기 때문에 최종 대륙붕 경계획정시에도 비교적 한반도 쪽으로 치우쳐 경계획정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지형적 측면에서 중국 산둥반도가 황해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한국의 남단 또한 황해쪽으로 돌출되어 있다는 것에 주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형적 유형은 향후 황해지역에서 해양경계를 획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상술한 바와 같이 대륙붕의 생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대륙붕형성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가를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²⁵⁾ 해양법협약 제16조 2항에 따르면 “연안국은 해도 또는 지리적 좌표목록을 적정하게 공표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²⁶⁾ 1958년 9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정부 영해에 관한 선언》 제2조 2항에서는 “중국대륙과 그 연해도서의 영해는 대륙연안상의 그리고 연해 외연 도서상의 각 기점을 연결한 직선을 기선으로 하고, 기선으로부터 외연 12해리의 수역을 중국의 영해로 한다. 발해만과 琼州海峽을 포함한 기선 이내의 수역은 모두 중국의 내해이다. 東引島와 高登島, 馬祖列島, 白犬列島, 烏山丘 島, 大小金門島, 大擔島, 二擔島, 東椗島 이내를 포함한 기선 이내의 도서는 모두 중국의 內海 도서에 속한다.”

²⁷⁾ 傅崑成, 《海洋管理的法律問題》(台北: 文笙書局, 2003), 178쪽. 한국이 황해쪽에 설정한 영해 직선기선은 한국의 남쪽에서 서해안 도서의 최외연을 타고 연결한 것으로, 이들 중 일부는 한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를 기점으로 삼은 것이어서 해양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중국에 불리하다는 주장을 볼 수 있다(袁古浩, 「國際海洋劃界的理論與實踐」(北京: 法律出版社, 2001), 182쪽).

²⁸⁾ 미 국무성 자료에 의하면 각각 3 m 이상의 수중암초와 영해로부터 12해리 밖에 위치한 저조고지(low tide elevation)로서 해양법협약 제121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영해측정 기점으로 사용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U.S. Dept. of State, *Limits in the Sea*, No.117, Straight Baseline Claim: China, July 9, 1996.

²⁹⁾ 蔡乾忠, “黃海含油汽盆地區域地質與大地構造環境”, 《海洋地質動態》第18卷 11期(臺灣, 2002), 8-12쪽; 李廷棟·莫杰, “黃海地質構造與油汽資源”, 《海洋地質動態》第18卷 11期(臺灣, 2002), 4-7쪽.

환경생태 및 역사적 요인

황해는 주변지역이 모두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황해 해양경제계획시에는 환경생태적 요인이 중시될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역사적 논증을 통해 중국이 이들 지역의 역사적 강국이었고 과거 인근 국가와의 역사적 관계를 통해 비교적 많은 역사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역에 대한 역사적 권원은 인근 국가와의 영해 확정에 있어서 연안 수역에서의 오랜 역사적 활동과 관할권에 대한 입법적 고려로서 작용될 수 있을 뿐이다. 비록 관습 국제법과 1958년의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이 역사적 만(historic bays)과 기타 역사적 권원의 기능이나 다른 특수한 사유(reason of historic title or other special circumstances)를³⁰⁾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리가 영해 이원에 까지 확대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중국(대만) 학자에 의해서도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³¹⁾. 또한 1958년에 채택된 대륙붕에 관한 협약이 “연안국의 권리는 연안국이 탐사하지 않거나 또는 그 천연자원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여하한 국가도 연안국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그러한 활동(대륙붕에 대한 탐사와 자원 개발)을 행하거나 당해 대륙붕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배타적이다”는 것과³²⁾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실효적 또는 관념적 점유 또는 어떠한 명시적 선언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규정³³⁾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ipso facto, ib initio*”, 즉 육지영토에 대한 주권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타의 조건에 따른 권리 향유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한편, 1985년 리비아·몰타 대륙붕사건(Libya-Malta Continental Shelf Case, ICJ)에서는 연안 200해리 미만의 대륙붕에 있어서 자연적 연장원칙과 지질학적·지형학적 기준을 배제하고 등거리 원칙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판결한³⁴⁾ 것을 보면 경계획정을 위한 절대적 고려요소는 현재 까지 도출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은 경제적 의존성과 자연자원, 국가안전과 방위 및 잠재적 충돌요소 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황해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대체로 중국과 한국이 황해 대륙붕에 갖는 경제적 의존과 이익수요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 경제적 의존성의 문제는 향후 천연자원의 문제와 함께 당사국간 쟁점 대상이 될 것은 분명하다³⁵⁾. 당사국인 한국의 서울, 중국의 북경, 북한의 평양 등 주요 도시가 모두 황해에 인접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안전·방위 및 항행이익 등의 측면에서 경계획정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³⁶⁾. 이와 함께 황해 경계획정시 주의할 요인으로 삼국의 경계획정으로 인한 이들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을 들고 있다. 이는 황해라는 지역적 민감성으로 인해 해당 국가의 안전요소 또한 관련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4. 통킹만 경계획정

중국과 베트남이 2000년 12월 25일 체결한 ‘중국정부와 베트남정부의 통킹만 어업공동 협정’(Agreement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on Fishery Cooperation in Beibu Bay)(영문, 이하 “통킹만 어업공동협정”이라 함)과 ‘중국정부와 베트남 정부의 통킹만 영해·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China and Viet Nam on the demarcation of the territorial water,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and the continental shelf of China and Viet Nam in the Gulf of Tonkin on 25 December 2000)’(이하 “통킹만 경계획정협정”이라 함)은 구체적 어업문제 합의에 대한 양국의 이견으로 인해 2004년 6월 30일에야 발효되었으며, 더구나 어업공동 협정만 공개되었을 뿐 후자인 통킹만 경계획정협정의 자세한 내용은 여전히 비공개로 되어 있다.

³⁰⁾1958년의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7조 6항 및 제12조.

³¹⁾Ying-jeou, Ma, *Legal Problems of Seabed Boundary Delimitation in the East China Sea*(Baltimore : Contemporary Asian Studies, INC., 1984), p.128.

³²⁾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 제2조 제2항.

³³⁾1958년 대륙붕에 관한 협약 제2조 제3항 및 1982년 해양법 협약 제77조 3항.

³⁴⁾ICJ Reports(1985), p.22 ; 이 외에 우선적인 사용과 법규 및 점유로 역사적 권원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1982년 Tunisian-Libya Continental Shelf Case에서 ICJ가 분쟁지역에서의 튀니지의 역사적 권리(historical rights)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 ICJ Reports(1982), p.74.

³⁵⁾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6일 양자만보(揚子晚報)를 인용, “중국이 춘샤오가스전 개발의 ‘실질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중국측이 470 km에 이르는 가스관을 해저에 매설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중국측 보도에 대해 일본정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2광구 일대 대륙붕 석유탐사에 이익을 제기하고 있다. 세계일보, 2004.08.28(토) 인터넷판 및 동아일보, 2004년 9월 10일, A25쪽. 참조.

³⁶⁾傅崑成, *海洋管理的法律問題*(台北 : 文笙書局, 2003), 179쪽.

통킹만(Gulf of Tonkin) 경계획정협정은 양국의 비공개로 인해 중국과 베트남 외교부 관리들이 인용한 보도를 통해 유추할 수밖에 없다. 특히, 통킹만 경계획정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여야 할 문제로는 i) 양국이 해역 경계획정에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임하였고 또한 관찰시키고 있는지의 문제, ii) 해역의 중간지점에 있는 도서에 대하여 어떠한 효과를 부여하였는가, iii) 대륙붕의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체결 내용은 어떠한 결론으로 합의 되었는가, iv)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이 동일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차후 협약 원문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나, 현재까지 간접적 통로를 통해 드러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킹만 경계획정협정은 서언과 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⁷⁾. 제1조는 양국이 통킹만의 해양 경계획정을 하는 법률적 근거를 확정하고 있고, 또한 본 협정의 경계획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모두 21개의 좌표를 이용해 양국의 통킹만에서의 영해·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대한 경계선을 확정하고 있다. 또한 협정은 월경(또는 경계 양립성) 석유자원과 기타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 및 생물자원의 보호·이용 등에 대한 사항의 공동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제6조와 제9조는 양국의 해양법에 대한 입법 문제를 재천명하고 있으며, 제8조는 양국의 통킹만 생물자원에 대한 보호·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의 공동원칙, 제10조는 분쟁해결 절차, 제11조는 본 협정의 발효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³⁸⁾.

이 외에, 동 해역에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었던 白龍尾島(Bach-long-Vi Dao)에 대한 관할권 확정과 섬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는 중국 매체들의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추론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즉, 2004년 7월 1일 중국의 많은 매체들이 공동어업협정 발효에 대한 儀式을 보도하면서, 이미 공개적으로 “중국 어선은 일률적으로 白龍尾島(Bach-long-Vi Dao) 15해리 범위내의 수역에는 진입하지 못한다”고 보도한 것을 보건대, 白龍尾島(Bach-long-Vi Dao)에 대한 관할권 문제는 이미 본 협정의 중요 대상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³⁹⁾.

나아가, 여기서의 ‘15해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바, 먼저 중국이 해당 도서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미 해당 해역에 대한 관할권 쟁의

이전에 섬에 대한 베트남 귀속권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과 베트남은 해당 도서에 대한 경계획정 효과 부여의 문제에 있어서 12해리 영해와 3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향유하는 것으로 경계를 획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기존 협상과정에서 “白龍尾島(Bach-long-Vi Dao)를 계산하지 않는 등거리선이 형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일 수 있으며, 이것이 중국에도 유리하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 매체의 보도 내용에 대하여 베트남의 2004년 7월 1일 「人民報」 역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베트남 외교 부장은 통킹만 경계획정에 대한 베트남 기자 답방과정에서 “통킹만의 동쪽 경계선은 白龍尾島(Bach-long-Vi Dao)에서 15해리이다”라고 해석한 바 있다. 이는 중국 관련 인사들이 행한 언행과 매체의 보도와 일치하는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통킹만 경계획정에서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을 획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획정선을 이용하였다는 점이다. 베트남과 통킹만 경계획정에 참여하였던 중국 國家海洋局 정책법규 사무처 주임에 의하면 “중국과 베트남이 달성한 경계획정 협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하나의 경계선을 이용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두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은 어업자원 등과 같은 생물자원 그리고 대륙붕은 석유·가스·광물 등의 무생물자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해양법협약에 의하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제도라는 두 제도로 나누어지지만, 해안을 對向하고 있는 국가의 경계획정에서는 통킹만처럼 두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수역이 모두 중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향후 장기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선을 통해 획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이러한 조건하에서 양국은 하나의 경계선을 통해 두 개의 경계획정문제를 매듭지었다”고 지적하고 있다⁴⁰⁾.

이는 향후 중국이 해양경계획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원칙으로 작용할 것이며, 우리로서는 황해와 동중국해 지역에서의 중국과 경계획정시 하나의 경계선을 통한 획정 문제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문제를 분리하여 획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경계획정 협상에서의 전략적 대처가 요구된다.

37)中國 環球時報(2004. 7. 1).

38)「外交部條約法律司海洋處處長 蕭建國」, 중국 新京報(2004. 8. 3).

39)中國 先驅導報(2004. 6. 30).

40)中國 南方網訊(2004. 8. 3).

41)中國 先驅導報(2004. 8. 3).

결국, 중국은 협상에서 현재 베트남의 白龍尾島(Bach-long-Vi Dao)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하는 조건과 白龍尾島(Bach-long-Vi Dao)에 대한 부분적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인정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협정 내용을 근거로 보건대, 중국과 베트남은 통킹만 해역에서 각자 46.77%와 53.23%의 해역 면적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주장한 원칙과 제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확정되었다⁴¹⁾.

5. 결 론

대륙붕경계확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자연적 연장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은 언급한 바와 같다. 지금까지 살펴본 해양경계확정 원칙은 우선 당사자간의 합의가 최우선하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든 관련사정을 고려하여 형평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련사정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해안선 길이, 해안선의 형태, 섬의 존재 및 위치, 지질학/지형학적 특성, 경제·방위상의 요인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국제재판소의 판결에서는 이러한 관련사정을 개별사건마다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어 경계확정분쟁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황해의 대륙붕경계확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중국학자들은 i) 지리적 요인, ii) 지질학적 요인, iii) 지형적 요인, iv) 환경 및 생태적 요인, v) 역사적 이익, vi) 사회·경제적 이익을 들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이 체결한 통킹만 해양경계확정 조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간선원칙에 따라 경계확정을 한 것으로, 이는 중국이 의도하였던 'half and half'에 의한 경계원칙⁴²⁾ 관철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이러한 합의의 전제조건으로는 통킹만내의 베트남 점유 白龍尾島(Bach-long-Vi Dao)의 영유권을 중국이 인정하고 동 도서에 대한 부분적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는 바, 이는 과거 "白龍尾島

(Bach-long-Vi Dao)를 계산하지 않는 등거리선"에 대한 주장을 양보하여⁴³⁾ 해양경계확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의미에서, 통킹만 경계확정과 어업공동 협정의 서명은 1999년 서명된 육지 경계조약(the Treaty on Vietnam-China Land Border) 이후 나온 것으로⁴⁴⁾, 중국과 베트남으로서는 역사적으로 지속된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협정의 발효는 중국이 주변 8개 국가와의 관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해양경계확정 문제에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과, 우리로서는 향후 중국이 우리와의 해양경계확정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과 방향을 좁힐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협상에 대비한 우리의 해양경계확정에 대한 원칙을 구체화 할 수 있다는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현재까지 전지구적으로 약 130개 이상의 해양경계확정이 성립되어 있으며, 20여개의 국제사법기관 및 중재판결이 나와 있으나, 아직도 거의 300여개에 달하는 해양경계 분쟁이 앞으로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해양경계확정이 각 국가에게 부여하는 의미가 크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과 해양경계확정을 하여야 하는 바, 한번 확정된 해양경계는 되돌릴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통킹만 경계확정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를 보면 다음과 같다. 통킹만의 해저지형은 중국이 황해에서 직면한 것과 정반대의 형태로서 중국이 통킹만 경계확정시 거리개념을 사용한 것이 황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계확정원칙은 육지의 자연연장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전략적으로 중간선등 다른 요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주변해역의 이해가 최우선 되어야 하며, 특히 과학적 자료의 확보와 분석을 통해 경계확정 전략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조사된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해양 지질학적 조사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⁴²⁾Douglas M. Johnston and Mark J. Valencia, *Pacific Ocean Boundary Problems - Status and Solutions* (Dordrecht/Boston/London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1), p.146.

⁴³⁾Joseph R. Morgan and Mark J. Valencia edited, *Atlas for Marine Policy in southeast Asian Sea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p.50.

⁴⁴⁾육지경계확정에 대하여 베트남과 중국은 각각 2000년 4월 29일(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과 동년 6월 9일(베트남 국회)에 본 협정에 대해 비준하고, 동년 7월 6일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되었다. 그러나 양국의 육지 경계확정은 비공개로 되어있다. "Viet Nam-China Land Border Treaty is Crucial Event in Bilateral Relations, says Deputy Prime Minister Carri, *Vietnam News Agency(VNA)*(1999. 12. 30) ; "Chinese Premier Lauds Traditional Friendship with Viet Nam", *News Bulletin*(2000. 5. 11) ; "Chinese Premier Receives Vietnamese Deputy Prime Minister", *Vietnam News Agency(VNA)*(2000. 5. 10) ; "National Assembly issues Resolution on Ratification of Viet Nam-China Land Border Treaty", *Vietnam News Agency(VNA)*(2000. 6. 20) ; "Viet Nam-China Land Border Treaty Takes Effect", *News Bulletin*(2000. 7. 7).

한·중·일 3국간 해양경계획정 합의에 실패할 경우 사법적 해결에 대비하여 기존 국제판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전략적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국가해양정책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수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중간점검하고 통합적,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야 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사 사

이 논문은 해양수산부의 황해 퇴적물 이동현상 및 퇴적환경연구(PM21800)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Received Oct. 25, 2004

Accepted Nov. 30, 2004